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제출용]

등기번호	021672	
등록번호	195511-0216725	
상 호	주식회사 와이지엠 (YGM Co., Ltd.)	
본 점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186-26	2022.09.15 변경 2022.09.15 등기

공고방법	창원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경남신문에 게재한다.	
------	----------------------------	--

1주의 금액	금 5,000 원	
--------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 주	
------------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 연 월 일 등기 연 월 일
발행주식의 총수	12,868 주	금 64,340,000 원	2023.12.16 변경
보통주식	12,603 주		2023.12.28 등기
상환전환우선주식	265 주		

목 적			
1. 조선기자재 제조업			
1.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1. 선박용 철골 조립 구조재 제조업			
1. 조선기자재 도매 및 소매업			
1. 조선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 특수선 관련 컨설팅업			
1. 조선기자재 무역업			
1. 조선기자재 설치업			
1. 선박의장품 설치업			
1. 부동산 임대업			
1.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019.12.05 추가	2019.12.05	등기>
1.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 및 수출업	<2019.12.05 추가	2019.12.05	등기>
1. 전기기계 제조업	<2019.12.05 추가	2019.12.05	등기>
1. 체계공학 기술용역업	<2019.12.05 추가	2019.12.05	등기>
1. 특수선박용 방탄판 제조업 및 수출업	<2019.12.05 추가	2019.12.05	등기>
1. 펌프제품 개발, 제조, 판매 및 도,소매업	<2019.12.05 추가	2019.12.05	등기>
1. 펌프장치 부품 개발, 제조, 판매 및 도,소매업	<2019.12.05 추가	2019.12.05	등기>
1. 정보추출 소프트웨어 개발업	<2019.12.05 추가	2019.12.05	등기>
1. 탄소화설비 제조업	<2022.09.15 추가	2022.09.15	등기>
1.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2022.09.15 추가	2022.09.15	등기>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등기번호	021672
------	--------

임원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 이영관 691215-*****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301, 가동 109호(구산동, 유신주택)	2021년 02월 23일	중임	2021년 02월 23일	등기
		2024년 02월 23일	중임	2024년 02월 23일	등기
사내이사 이상희 710228-*****		2021년 02월 23일	중임	2021년 02월 23일	등기
		2024년 02월 23일	중임	2024년 02월 23일	등기
사내이사 이영관 691215-*****		2021년 02월 23일	중임	2021년 02월 23일	등기
		2024년 02월 23일	중임	2024년 02월 23일	등기

종류주식의 내용	
상환전환우선주식	
[2023년 12월 16일 발행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내용]	
1. 명칭 등	
본건 주식은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을 말하며,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보통주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고, 전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며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서, 액면가액은 1주당 금5,000원, 발행가액은 1주당 금793,470원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각 조항에서 정한바와 같다.	
2. 의결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신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본건 종류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3. 존속기간	
① 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효력발생일(거래완결일의 다음 날)로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본건 종류주식은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별도의 절차 없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종류주식은 보통주식과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본건 종류주식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5.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종류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건 종류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연 1%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누적적으로 우선하여 배당 받고,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본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② 주식배당의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식을 합한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단,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③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등기번호	021672
------	--------

④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⑤ 회사의 정관에 정함이 있고 투자자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서면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상법 제449조의2, 상법 제46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 승인과 이익배당을 하여야 한다.

6.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종류주식은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가 부여된 종류주식으로서,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1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8]%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분배 받는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② 만일 제1항에 따른 분배 후 잔여재산이 남는 경우 그 나머지 재산은 보통주식에 분배를 하고, 보통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종류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각 주주의 보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하며, 이 경우 본건 종류주식 주주는 보통주로 전환하였을 경우 부여받을 수 있는 최대 수량의 보통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회사가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아래 사유를 말한다.

사유: 법정 해산사유의 발생일(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상법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주 총회의 결의)

7. 전환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날의 전일까지 본건 종류주식을 언제든지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한 전환청구서 2통 및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2)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은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제1호에 따라 전환청구서 및 전환될 본건 종류주식의 주권이 제출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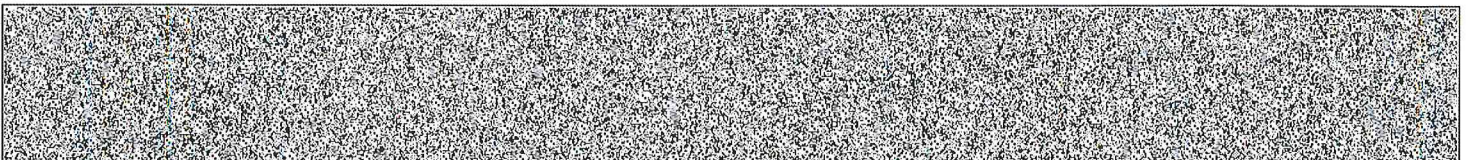
3)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상기 제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4) 회사는 전환청구서 또는 전환될 본건 종류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즉시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는 등 주식 발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조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건 종류주식 1주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식 수(이하 “전환비율”)는 1주이며, 보통주식의 발행가액(이하 “전환가액”)은 본건 종류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으로 한다.

2)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회사가 발행한 신주의 발행가액,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그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은 그 하회하는 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등기번호	021672
------	--------

3) 본건 종류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에 본건 종류주식의 투자자는 회사로부터 투자자가 보유한 본건 종류주식과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_i = B_i \times \{(A_c/B_c) - 1\}$$

N_i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B_i : 발행 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B_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 총 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A_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 총 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4)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회사가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5)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에 회사가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는다.

6)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액을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한다.

7) 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이 그 당시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가격을 그 평가가액으로 조정한다.

8) 본건 종류주식의 투자 이후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이 조정이 본건 종류주식보다 유리한 경우 후행투자자의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④ 회사는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 전까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이하 “수권주식”)에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하여야 한다. 만약, 회사의 잔여 수권주식 수가 본건 종류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 수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권주식 수를 증가시켜야 한다.

⑤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는 상법 제346조 제2항에 의한 회사의 전환권 행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전환권을 행사한 종류주식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8. 상환권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본건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본건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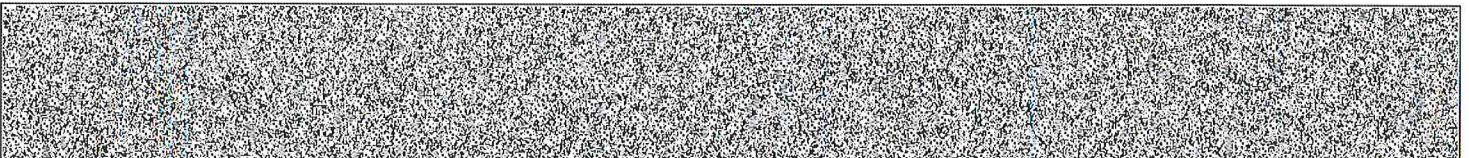
② 회사는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로부터 상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③ 본건 종류주식의 1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종류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본건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에서 이미 지급된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 회사는 본건 종류주식의 상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상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준비금 감소 등 법률상 가능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본건 종류주식의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 본건 종류주식의 상환에 사용할 수



등기번호	021672
------	--------

있는 재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제2항의 절차가 가능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인은 함께 제1항의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위약벌로서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3년 12월 16일 설정 2023년 12월 28일 등기

전 환 사 채

제1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총액
금1,600,000,000원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100,000,000원권 단일권종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액면금 전액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1) 본건 전환사채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비율은 본건 전환사채 권면금액의 100%로 하고,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이하 “전환가액”)은 금1,165,682원으로 한다. 1주 미만의 단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환권행사로 인한 주식 교부 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주 대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는 지급 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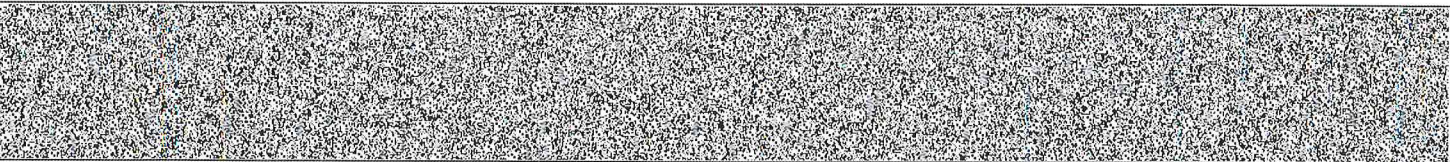
2)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그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본 호의 경우 조정일은 공모청약일로 하고, 회사는 조정이 발생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통보한다.

3) 회사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과의 합병, 주식교환 등을 통해 상장을 위한 심사나 공모주 청약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상장되는 등의 이른바 ‘우회상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먼저 아래 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 후 우회상장의 효과가 발생한 당시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 조정된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당시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그 때로부터 3년간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우회상장의 효과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전환 시 발행될 주식과 동일한 종류의 구주의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최근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직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4)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 전에 회사가 발행한 신주의 발행가액,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신주 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그 당시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그 하회하는 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아래의 수식에 따라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조정 전 전환가격×{기발행 주식수 +(신발행 주식 수×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 주식수+신발행 주식수)



등기번호	021672
------	--------

(위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시가"는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기 전까지는 본 항에 의한 "전환가격"으로 하되, 상장된 이후에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론 권리락주가 (유상증자 시) 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

6)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 전에 회사가 합병,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다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7) 조정 후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액 미만으로 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주주총회결의 및 법원의 인가 등 액면가액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액면가액 미만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하는 경우, 추후 관련법규의 변경으로 액면가액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8) 본건 전환사채의 인수 이후 후행 투자자의 전환가격 조정이 본건 전환사채 보다 유리한 경우 후행 투자자의 전환가격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주식회사 와이지엠 보통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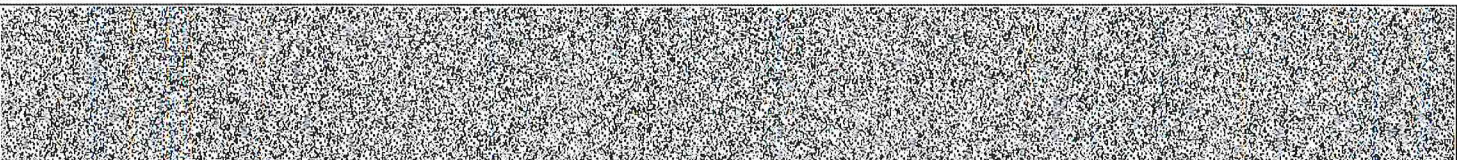
1. 전환청구기간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날(2026년 04월 04일)부터 만기일의 전일(2029년 04월 02일)까지
2025년 04월 04일 발행 2025년 04월 17일 등기

회사성립연월일 2018년 02월 22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18년 02월 22일 등기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1,000원 영수합



등기번호	021672
------	--------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는 지점·지배인에 관한 사항과 현재 효력이 없는 등기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서기 2025년 04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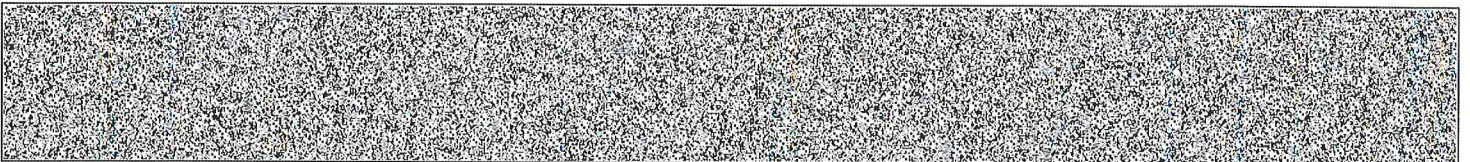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120201047001010214100512002271601T2E0N1R1E5T5N911C

발급확인번호 6727-AAYL-QGKN

발행일 2025/04/21